

제28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

2022. 7. 22.

강 서 구 의 회
행정·재무위원회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행정·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행정의 문제를 적발·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1. 감사의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 ~ 제54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2. 감사기간

- 2022. 9. 2.(금) ~ 9. 8.(목) (7일간)

3.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

- 대상기관: 서울특별시 강서구청
 - 행정관리국: 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협치분권과, 문화체육과, 교육지원과, 민원여권과
 - 기획재정국: 기획예산과, 홍보정책과, 재무과, 세무관리과, 세무1과, 세무2과
 - 감사담당관, 신청사건립추진단
 - 동주민센터: 화곡제1동, 화곡제2동, 화곡제3동, 화곡제8동, 우장산동, 발산제1동
- 대상사무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·재무위원회 소관 사무 및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

4. 감사위원회 편성(7명)

구 분	행정·재무위원회	사무보조직원
위원장	김성한	· 수석전문위원: 최광호 · 전문위원: 손영아 · 직 원: 김지영 · 속 기 사: 김미성, 박자영
부위원장	김현진	
위 원	정정희, 박학용, 김희동, 한상욱, 고찬양	

5. 감사일정 및 대상

위원회명	감사일정		대상기관	감사장소	비 고
	일자	시간			
행정·재무 위원회	2022. 9. 2.(금)	10:00	행정관리국	강서구의회 제1회의실	
	2022. 9. 5.(월)	10:00	기획재정국	강서구의회 제1회의실	
	2022. 9. 6.(화)	10:00	감사담당관	강서구의회 제1회의실	
		14:00	신청사건립추진단		
	2022. 9. 7.(수)	10:00	동 주민센터	강서구의회 제1회의실	

6. 주요 감사사항

-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
- 2022년도 예산집행 사항
- 2022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
-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-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
- 기타 필요한 사항

7.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

- 2022년도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
-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
- 행정·재무위원회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
8. 세부 감사요령

가. 감사방법

- 감사는 소관부서 감사자료 제출요구, 업무보고 청취, 서류감사,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
-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실시

나. 감사자료 제출요구

-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 요구

다. 증인 등의 출석요구

- 관계공무원
 - 행정관리국장, 기획재정국장, 행정지원과장, 자치행정과장, 협치분권과장, 문화체육과장, 교육지원과장, 민원여권과장, 기획예산과장, 홍보정책과장, 재무과장, 세무관리과장, 세무1과장, 세무2과장, 감사담당관, 신청사건립추진단장
 - 화곡제1동장, 화곡제2동장, 화곡제3동장, 화곡제8동장, 우장산동장, 발산제1동장

라. 감사 진행순서

- (1) 감사실시 선언(위원장)
- (2) 위원장 인사 말씀
- (3) 증인선서(관계공무원)

- (4) 업무보고 청취
- (5)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
- (6) 질의 및 답변
- (7)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
- (8) 감사종료 선언

마. 유의사항

- (1) 감사의 한계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)
 -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
- (2)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)
 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
- (3) 감사 주의 의무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)
 - 감사위원이 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
 -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
- (4) 감사 공개원칙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)
 - 감사는 공개함. 다만,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(5)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)
 - 현지확인, 서류제출,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·서류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

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-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

감사위원은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감사담당관, 신청사건립추진단, 등 별도로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제출

-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위원장은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 채택

-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

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·기간·감사대상기관(부서)·경과 등 일반사항과 요구사항(시정, 개선요구사항, 수범사항 등)의 감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

- 감사결과 보고

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

붙임 1. 선서서 1부.

2. 감사결과 의견서 양식 1부.

선 서

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
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·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제6항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
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
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22년 9월 일

소속 및 직위 :

증 인 : (인)

[붙임 2]

감사 결과 의견서

행정·재무위원회

감사대상부서:

감사위원:

(인)

구 분	내 용	비 고
요구사항		